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등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4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금지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5월 13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Ⅲ. 검토의견

1.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금지 등

개정안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품을 등록할 때 신고·승인정보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그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제2항 및 제5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생략)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u>살생물처리제품</u> 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u>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u> 하거나 구매를 대행	② ----- ----- <u>살생물처리제품(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u> ----- ----- -다음 각 호----- ----- <u>중개</u>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2.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에는 금지된 판매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품을 등록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승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신고·승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

3. 제2호에 따른 삭제 관련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조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구매대행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
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
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
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 6. (생 략)

<신 설>

제40조(위반사실 공표) -----

--제35조제4항, 제37조-----

-----.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을 안전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에 따라 제35조제2항에 따른 판
매중개·구매대행자에 대하여 필요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
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장
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
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제58조(벌칙)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5조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법¹⁾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제품 겉면에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안생품·살생물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제품에 대하여 누구든지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제1항), 해당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도 금지하고 있으며(제2항),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자가 본인의 사이버몰에서 해당 금지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고 있음(안 제2항 괄호 부분).

[제35조제1항에 따라 판매·증여 및 판매중개·구매대행이 금지되는 물품]

목	주요 내용
제1호가목	-기후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안생품 지정·고시 전 제조·수입의 금지를 명한 생활화학제품
나목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품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안생품
다목	-안전기준 확인을 받았으나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등의 사항을 기후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안생품
라목	-안생품 겉면 또는 포장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생품
제2호가목	-살생물물질 승인·변경승인(물질승인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
나목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수입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제3호가목	-살생물제품 승인·변경승인(제품승인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나목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수입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
다목	-살생물제품 겉면에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살생물제품

그러나 이러한 금지 물품은 제조·수입제품에 한정²⁾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국내로 수입되지 않는 물품, 즉 구매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위해성 있는 해외직구 제품³⁾이 국내에 반입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된 직

2) 안생품 안전기준의 확인 또는 승인, 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등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는 주체는 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며, 제품 겉면 등에 제품 내용을 표시할 의무를 가진 주체 역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임.
또한 기후부장관의 명령도 “제조·수입의 중지”에 관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국내로 수입되지 않는 제품 등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현재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은 444개임.
(‘24)60개, (‘25)357개, (‘26)27개 확인

접구매 해외제품의 경우에도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②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명령과 위반사실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③ 판매중개·구매대행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위해성 있는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금지

개정안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⁴⁾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대상(안 제35조제2항)에만 포함하고 있는데,

직접구매 해외제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판매·증여 또는 판매·증여 목

4)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의 진열·보관·저장을 금지하는 현행법 제35조제1항의 적용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방식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안 제35조제3항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금지된 판매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⁵⁾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품을 등록할 때 신고·승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치”를 추가하고 있는데,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경우 현행법에서 별도의 신고·승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안에 따라 어떤 정보 입력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⁶⁾⁷⁾가 있음.

②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위반자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및 위반사실 공표

안 제35조제4항에서는 금지 물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58조), 안 제40조에서는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5) 현행법 제35조제2항에서는 판매 등의 금지물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 삭제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또는, 신고·승인 정보의 입력은 국내 제조·수입 물품에 한정되며 직접구매 해외제품은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7) 관련하여, 네이버,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자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조치’ 등 개정안 문구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신설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짐8).

현행법에서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35조제2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9)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35조제4항에 따라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게 판매중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수준을 상향하는 것은 제35조제1항 위반 시 벌칙 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 제재 수준 비교]

행위	제35조제1항 (판매·증여)	제35조제2항 (판매중개·구매대행)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중개·구매대행 중지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현행법과 유사하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

8) 다만, 개정안 제35조제4항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표현은 판매중개 또는 구매대행 행위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35조제1항의 판매·증여 금지와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판매중개 또는 구매대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조¹⁰⁾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대행업자에게 판매중지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해당 조치만으로 위해 방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그 조치를 명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항), 공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49조제1항 제34호).

③ 판매중개·구매대행자 조사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검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 제50조제2항은 안 제35조제2항에 따른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⑨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제4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¹¹⁾.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¹²⁾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11) 다만, 현행법 및 개정안에서는 “판매중개·구매대행자”를 별도로 약칭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 법문을 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검사설비, 제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